

“제32회 자랑스러운 시민상” 후보자 추천 공고

부산광역시는 부산문화방송(주)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거나 각종 재난·재해사고 발생 때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 등을 표창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『제32회 자랑스러운 시민상』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6. 10.

부산광역시장

1.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개요

가. 부문 : 3개 부문 (애향, 봉사, 희생)

나. 인원 : 7명 (대상 1, 본상 3, 장려 3)

- 대상은 부문별 최고 득점자 중 1명, 본상·장려는 부문별 각 1명

다. 훈격 : 부산광역시장, 부산문화방송(주) 대표이사 사장 공동

라. 시상 : 부산시민의 날 행사시('16. 10월초) ▷ 표창패 전수

2. 후보자 추천

가. 추천기준 **※ 공통사항 : 부산광역시내에 3년이상 거주한 시민(시상일 기준)**

시상 부문	추천 대상
애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시민•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
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•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공헌한 시민
희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시민•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, 효행시민

나. 추천권자

- 市 소속 실장·본부장·국장 및 직속기관장·사업소장

- 각 자치구·군 구청장·군수

- 각급 기관장, 시민·사회단체장, 사업체의 장

- 일반시민(단,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-서식⑦)

※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: 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금지

다. 추천제한

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
- 가.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나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라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마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- 바.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- 가. 최근 2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나.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
 -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 -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. 다만, 상기 가)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- 가.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나.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.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

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- 가.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

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나.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: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※ 기타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포상업무지침 준용

라. 제출서류 : 시 홈페이지(www.busan.go.kr/공고란) 게재 및 구·군 총무과(표창담당부서) 비치

- (서식①) 추천서 1부
- (서식②) 신상명세서 1부
- (서식③) 공적개요서 1부
- (서식④) 공적조서 1부
- (서식⑤) 현지조사확인서 1부
- (서식⑥)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- (서식⑦) 연명추천서(일반시민 20인이상 연명 추천시 제출)
- 반명함판 컬러 사진 2매(추천서 및 신상명세서 부착)
-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(언론보도사항, 활동사진 등) 각1부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마. 추천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5. 6. 10(금) ~ 8. 1(월) ▷ 53일간
- 방 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
- 접 수 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실
(☎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☎ 051-888-1807)

3. 수상자 결정

가. 심사기구 :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
나. 심사방법 :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병행

※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부문 · 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음